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 책임 등 규정〉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84호)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02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총괄 검토	5
2. 조문별 검토	12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책임 (이철규의원안 및 김정호의원안)	12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준수절차(이철규의원안)	22
다.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제공 근거 마련 (이철규의원안 및 김정호의원안)	27
라. 역외적용 규정 신설 및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이철규의원안)	31
마. 서면실태조사(이철규의원안)	36
바. 위반사실 공표 및 과태료(이철규의원안)	38
사. 벌칙(이철규의원안 및 김정호의원안)	41
※ 참고자료	44

I.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05684호】

1. 발 의 자 : 이철규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9.
3. 회부연월일 : 2024. 11. 20.

【의안번호 제2205802호】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2.
3. 회부연월일 : 2024.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제2205684호】

제안이유

온라인에서의 상품, 서비스 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개인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상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배송받는 해외 직구 비율도 급증함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은 가상의 공간이나 서버 등 거래 중개

수단을 통하여 유통되므로,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거래 중개수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자 등의 위조상품 신고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플랫폼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상표권자 등의 상표권 침해 신고, 침해 방지 조치 등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국외 행위 적용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 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마817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 책임 등을 규정함(안 제108조의2 신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미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의3).

라. 상표권자 등이 민사상 소 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침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4 신설).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국외행위에 관한 적용 규정을 신설함(안 제108조의5 신설).

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8조의6 신설).

사. 특허청장이 상표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규정을 마련함(안 제108조의7 신설).

아. 특허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9조의2 신설).

자.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

공받은 자가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거나, 상품판매 재개요구 등을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34조의2 신설).

【의안번호 제220580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약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따른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08조의2·제108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2건의 개정안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준수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이철규의원안은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이용자의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상표권¹⁾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안 제108조의2 신설), ③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방지 조치 의무 부여 및 미이행 시 제재규정(시정명령, 과태료 및 공표)을 마련하는 한편, 위조상품 판매자의 신상정보 제공 제도 도입, 국외행위에 관한 적용 규정,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특허청장의 서면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08조의3 신설 등).

김정호의원안은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②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행위 및 침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08조제3항 및 안 제108조의2 신설), ③ 그 밖에 위조상품 판매자의 신상정보 제공 제도 도입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08조의3 신설 등).

1) 전용사용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표 1]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이철규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하는 자(안 제2조제1항제12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 등을 양도 또는 인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안 제2조제1항제12호)
	(서비스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시스템이나 설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안 제2조제1항제13호)	-
침해책임 및 면책요건	(침해책임)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 부여(안 제108조의2제1항)	(침해 간주 행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행한 다음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간주(안 제108조제3항)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중개의 이용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무과실 추정) 신고-차단조치(개정안 제108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 이행시 상표권자2)·판매자 양측 모두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안 제108조의2제2항) (모니터링 의무 면제) 상표권 침해 발생 모니터링 또는 사전 조사 의무 면제(안 제108조의2제3항)	(면책요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조치를 이행해야만 침해로부터 면책(안 제108조의2)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상품을 판매중단 또는 이용자 접근 차단조치를 하고, 게시물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 -조치 이행이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면책
준수절차 등	(준수절차)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안 제108조의3제1항). (침해방지조치 명령) 준수절차 미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8조의3제2항).	-

구분	이철규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정보 제공 등	(정보제공) 상표권자의 소 제기 등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자의 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안 제108조의4제1항)	(정보제공) 권리주장자의 소제기 등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자의 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안 제108조의3제1항)
	(정보제공명령 청구) 거절시 특허청장에게 정보제공 명령 청구(안 제108조의4제2항).	(정보제공명령 청구) 거절시 특허청장에게 정보제공 명령 청구(안 제108조의3제2항).
	(정보제공 소 제기권) 특허청장의 정보제공명령 미이행시 법원에 직접 정보제공 청구(안 제108조의4제6항)	-
역외 적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국외행위에 관한 적용 규정 마련(안 제108조의5)	-
국내 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안 제108조의6).	-
서면 실태 조사	특허청장이 상표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규정 마련(안 제108조의7).	-
위반 사실 공표	특허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안 제229조의2).	-
벌칙	권리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234조의2제1항)	권리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234조의2)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 신고를 하거나 상품판매 재개요구 등을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234조의2제2항)	-
과태료	특허청장의 침해방지조치 명령 불이행, 특허청장의 정보제공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237조제1항)	-

현행법은 상표 보호 목적³⁾의 일환으로 상표권에 관한 침해행위, 상표권자의 보호 및 침해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 침해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이 특히 문제되고 있음.

또한 특허청의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3만 건에서 2024년 23만건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⁴⁾

[표 2] 연도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126,542	171,606	181,131	198,853	225,841

자료: 특허청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표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⁵⁾ 온라인상의 상품 판매매개자에게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2) 전용사용권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3)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 사업개요

5)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거래 증가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급증 추세가 지속되는 한편, 유통채널이 다양화되고 판매방식이 교묘해짐 상거래플랫폼이 아닌 SNS, 카페·블로그 등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판매 제재 이후 다른 채널을 통해 재판매하는 상습판매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출처: 특허청의 2021년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사업 계획 보고서)

대법원 판례⁶⁾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 책임⁷⁾ 등에 근거하여 오픈마켓⁸⁾ 운영자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한 경우 방지조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온라인에서의 상품 판매를 매개하는 자에게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법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2건의 개정안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의 방지조치 의무가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무와 위반사항에 대

6) (대법원 2010마817) 오픈마켓 운영자는 ①상표권 침해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의 삭제·차단요구를 받거나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고 ③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됨(참고자료 2.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책임 관련 판례' 참조).

7)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8)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누구나 판매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운영 형식(문상일 외(2015), “온·오프라인 시장 융합과 경쟁정책 이슈 분석 연구”)을 말함. 출처: 나무위키

한 과태료 등 제재규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⁹⁾이 있으므로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특허청은 실제 권리자의 주의의무 외에도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노력 또한 필요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상표권자의 신고에 기반한 판매중단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내 입법례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요건과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¹⁰⁾

해외의 경우 EU에서는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신속하게 해당 콘텐츠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상표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고(디지털 서비스 법), 일본의 경우 특정전기통신제공자가 위조상품 신고 시 상당한 소명에 기초하여 콘텐츠를 삭제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¹¹⁾(통칭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¹²⁾)하도록 하는 등 주요국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시 온라인플랫폼에 대하여 신고에 기반한 조치의무(notice&take down)를 규정하고 이를 책임기준으로 활용

9)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의견임.

10) 참고자료 3.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요건 등에 관한 규정

11) 즉시 삭제의무는 아니며, 제3의 공적 판정기관(상표권관계신뢰성확인단체)의 판정서가 상당한 소명 판단에 핵심적인 자료로 기능함.

12)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참고자료 4.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제한 관련 해외 입법례’ 참조) 개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등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 부여 관련 법안 발의 현황

구분	발의의원 (발의일)	책무부담 사업자	주요내용	제재 규정
상표법 개정안	이원택의원 (2024.7.19.)	통신판매 중개업자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상표권 등 침해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 의무 부여 - 침해행위 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 침해행위 가 의심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용의 일시적인 정지	과태료 (의무 불이행)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고동진의원 (2024.8.2.)	통신판매 중개업자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경쟁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조치 의무 부여 - 부정경쟁행위 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 부정경쟁행위 가 의심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용의 일시적인 정지	과태료 (의무 불이행)

2. 조문별 검토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책임

(이철휘의원안 및 김정호의원안)

이철휘의원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이용자 용어를 정의하고(안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 책임 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김정호의원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용어를 정의하고(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표권 침해 간주규정을 두며(안 제108조제3항 신설), 일정한 조치를 이행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이철휘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u> <u>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u>	제2조(정의)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u> <u>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u>

	<u>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접속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u>	<u>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 등을 양도 또는 인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u>
<신 설>	13. “서비스이용자”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시스템이나 설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② (생략)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 책임 등)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통하여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해당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08조의3제2항, 제3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중개의 이용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2.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

<신 설>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및 서비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비스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적인 통제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라고 소비자가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통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일반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108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2.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건의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 책임을 부여 하되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책임 부담을 완화 함으로써 위조상품 유통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상표법」은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 유통 방지 책임이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무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2건의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용어를 정의하면서 이들에 대한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로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용어 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이철규의원안과 김정호 의원안은 모두 온라인상의 상품거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¹³⁾를 의미하나, 구체적인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3) (예시) 인터넷 중개쇼핑몰(쿠팡, 11번가, 네이버쇼핑, 카카오쇼핑 등), 상품거래 중개가 이루어지는 SNS(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등) 등

[표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용어 정의(안 제2조제1항제12호)

이철규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u>접속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하는</u> 자를 말한다.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u>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 등을 양도 또는 인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u> 자를 말한다.

한편, 2건의 개정안은 ‘설비를 제공(또는 운영)’하는 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함하고 있는데, 전자적 시스템(서비스)을 위한 ‘서버 운영자’, ‘서버 대여업자’, ‘망 서비스 제공자’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온라인 통신망 상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이르는 용어이며,¹⁴⁾ 법적 용어로는 현행 「저작권법」 제2조제30호¹⁵⁾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의하고 있음.

14) (예시) PC 통신 사업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인터넷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ISP)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음(출처: NAVER 국어사전).

15) 제2조(정의)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철규의원안은 자신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김정호의원안은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표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 등

이철규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침해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 책임 부여(안 제108조의2제1항)	(침해 간주 행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행한 다음 행위는 상표권 등 침해로 간주(안 제108조제3항)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 판매중개의 이용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건의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품 거래 중개수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 취지는 유사하나, 규율하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이철규의원안 제108조의2제1항의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가 모호하고,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¹⁶⁾

16)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임.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고의나 과실’은 민법 등에 기초한 개념으로 민사상 책임 인정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고, 구체적인 개념은 그간 축적된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판례 등을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임.¹⁷⁾

다음으로 김정호의원안 제108조제6항의 침해 간주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① 현행 「상표법」상 직접 사용 등 행위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¹⁸⁾ ② 유사 국내 입법례(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에도 침해 간주규정이 없다는 점,¹⁹⁾ ③ 대법원 판례의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침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등 개별적·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침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²⁰⁾ ④ 온라

17)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등

18) 현행 상표법 제108조(*)에서는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등록상표를 지정 상품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 직접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로 간주함으로써 상표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상표권 침해행위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서 동일한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19) 참고자료 3.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요건 등에 관한 규정

20)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①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③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픈마

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침해 수준과 동일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및 면제 등과 관련하여, 이철규의원안과 김정호의원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및 면책요건 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유사하나, 규정하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표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이철규의원안	김정호의원안
(무과실 추정) 신고-차단조치(개정안 제108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 이행시 상표권자·판매자 양측 모두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안 제108조의2제2항) (모니터링 의무 면제) 상표권 침해 발생 모니터링 또는 사전 조사 의무 면제(안 제108조의2제3항)	(면책요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조치를 이행해야만 침해로부터 면책(안 제108조의2)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상품을 판매중단 또는 이용자 접근 차단조치를 하고, 게시물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 -조치 이행이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면책

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의무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를 오픈마켓 운영자가 임의로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참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무과실 추정(면책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이철규의원안 제108조의2제3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발생 모니터링 의무 등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김정호의원안 제108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의 하나로 ‘침해 예방을 위하여 게시물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조상품 유통 예방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에게 상표권 침해행위 여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동 업무 수행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기술적·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의 신고 등에 기반한 판매 중단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저작권법」 제102조제3항²¹⁾의 경우 이철휘의원안과 유사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면제를 명시하고 있음.²²⁾

21)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2)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사전 모니터링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준수절차(이철규의원안)

개정안은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 발생을 주장 및 소명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 방지조치 후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²³⁾

[표 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이철규의원안
<신 설>	제108조의3(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절차)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상품에 관한 그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을 차단하거나 그 상품에 관한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 23) ①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사실을 주장할 경우 구체적인 소명과 함께 해당 상품에 관한 정보의 삭제나 접근 차단 등 침해 방지 조치 요청(제1항)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침해방지조치 및 통보, 신고·차단절차 사전공지 의무 신설(제2항, 제3항 및 제5항)
③ (서비스이용자(판매자)) OSP의 통보를 받은 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서비스 이용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서비스 재개요구 가능(제3항 본문). 다만 상표권자가 서비스 재개 일 이전에 소 제기 및 입증서류 제출시 서비스 이용 중단 상태 지속(제3항 단서)
④ (특허청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방지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 미이행시 시정명령 가능
⑤ (손해배상 책임) 상표권자·서비스이용자가 무분별한 신고·재개 요구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
⑥ (분쟁조정 절차 활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고·차단조치, 상표권자·서비스이용자간의 분쟁 등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 가능

서비스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는 것이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서비스이용자가 자신의 서비스 이용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그 서비스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해당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그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재개예정일 이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는 그 서비스의 재개를 명하는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가상 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 또는 설비를 이용하는 자들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미리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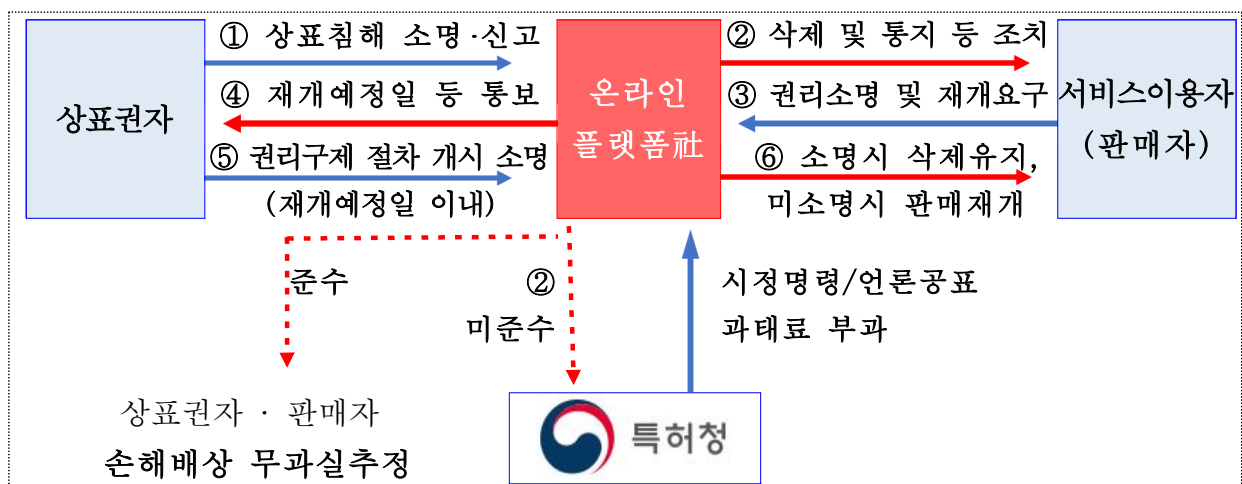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특허청장에게 그 조치 또는 공지를 하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특허청장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지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특허청장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2항 단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⑨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⑩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서비스이용자는 이 조에 따른 조치나 손해의 배상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1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① ----- ----- ----- ----- ----- ----- -조정위원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 방지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의할 경우 상표권자의 침해 주장과 소명을 근거로 침해 방지조치 요구를 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1] 상표침해 신고-차단 조치 절차도(이철규의원안)



자료: 특허청

다만, 상표권자의 침해 주장과 소명만으로 정보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경쟁사업자 견제 목적의 무분별한 권리 침해 주장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²⁴⁾도 있으므로,

24)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임.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위 법령 등으로 침해 주장 사실을 소명하는 절차를 적절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08조의3제10항²⁵⁾은 침해방지 조치나 손해배상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²⁶⁾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산업재산권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5) ⑩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서비스이용자는 이 조에 따른 조치나 손해의 배상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26) 발명진흥법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다.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제공 근거 마련

(이철규의원안 및 김정호의원안)

2건의 개정안은 상표권자가 민사상 소 제기 또는 형사상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유한 서비스이용자(판매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이철규의원안은 ① 특허청장의 정보제공명령 전에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② 특허청장의 명령에도 정보 미제공 시 상표권자는 법원에 정보제공명령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표 9]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이철규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신 설>	제108조의4(정보의 제공)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서비스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거절한 경	제108조의3(정보 제공의 청구) 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거절한 경우

	<u>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u> <u>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이용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u> <u>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요청 또는 제2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⑥ 제3항에 따른 특허청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u> <u>⑦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의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권리주장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u> <u>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u> <u>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권리주장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⑥ 그 밖에 권리주장자의 침해자 정보 제공 요청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개정안은 상표권자가 온라인상 상표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 법원에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작권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국내 입법례로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에 침해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²⁷⁾ 유럽·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²⁸⁾

유사입법례 및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침해자의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2건의 개정안은 정보제공 절차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27)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5조(정보청구권)(‘참고자료 5. 침해자 신원정보 제공 관련 국내 입법례’ 참조)

28) ‘참고자료 6. 침해자 신원정보 제공 관련 국외 입법례’ 참조

[표 10] 이철규의원안과 김정호의원안 비교

구분	이철규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정보제공 절차	○ 상표권자가 OSP에게 그가 보유한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성명·주소 등) 제공 요청	동일
	○ OSP가 거절한 경우, 상표권자가 특허청장에게 정보 제공명령을 청구	동일
	○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OSP에게 정보제공명령	-
	○ 명령을 받은 OSP는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동일
	○ 특허청장은 그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제공	동일
정보제공 소 제기권	○ OSP가 특허청장의 정보제공명령 미이행시 상표권자는 OSP를 상대로 법원에 직접 정보제공 청구도 가능	-

라. 역외적용 규정 신설 및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이철휘의원안)

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안 제108조의5 신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6 신설).

[표 1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이철휘의원안
<신 설>	<u>제108조의5(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규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u>
<신 설>	<u>제108조의6(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u> <u>1. 제108조의3제1항에 따른 요구의 수리</u> <u>2. 제108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통보 및 공지 등의 이행</u> <u>3. 제108조의3제7항 본문 및 제8항의 명령에 따른 조치, 공지 또는 자료 제시의 이행</u> <u>4. 제108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에 대한 수리</u> <u>5. 제108조의4제4항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u> <u>6. 제108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 이행</u>

	<u>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u> <u>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u> <u>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u> <u>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u> <u>⑤ 이 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통지·신고나 문서의 송달 등은 국내대리인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효력이 있다.</u> <u>⑥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u> <u>⑦ 특허청장은 제2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인한 과태료를 국내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u>
--	---

현행 「상표법」상 상표의 출원·등록 및 침해 등 효력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만 적용됨. 따라서 앞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준수절차 등 행위에 관한 규정(안 제108조의2 등)이 신설될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관련 국내법을 집행함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음.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만 위조상품 유통 방지 책임 등을 부여할 경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행위에 관한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역외적용 규정은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서 국내 소비자 및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은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국내대리인을 통해 침해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손쉽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역외규정 적용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정보통신망법」²⁹⁾, 「전기통신사업법」은 역외적용 및 국

29)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내대리인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공정거래법」 등은 역외적용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국내대리인제도만 규정하고 있는 등 국내 법률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표 12]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관련 국내 입법례³⁰⁾

구분	관련 법률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역외적용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내대리인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법, 게임산업법

해외 사례에서는 EU, 미국 등 주요국에서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³¹⁾

다만, 동 규제가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차단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이들 소재국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역외적용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역외규정 및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0) 참고자료 8. 역외적용을 규정한 국내 입법례, 9. 국내대리인제도를 규정한 국내 입법례

31) 참고자료 7.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관련 외국 입법례

첫째, 안 제108조의6제7항에서는 특허청장이 제2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인한 과태료³²⁾를 국내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온라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대리인에게도 해당 업무³³⁾ 미이행에 대하여 제재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그런데 이는 법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³⁴⁾의 일반 원칙과는 상충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08조의6제1항에서는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특허청이 이러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2) 이철규의원안 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특허청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의4제3항에 따른 특허청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8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3) 이철규의원안 제108조의6(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제108조의3제7항 본문 및 제8항의 명령에 따른 조치, 공지 또는 자료 제시의 이행
4. 제108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에 대한 수리
5. 제108조의4제4항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제108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 이행

3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 서면실태조사(이철규의원안)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상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7 신설).

[표 1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이철규의원안
<신설>	제108조의7(서면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상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서비스 관련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발명진흥법」 등에 근거하여³⁵⁾ 특허청은 매년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³⁶⁾

35) 「위조상품 단속지원 업무지침」

제2조(단속지원의 근거) 보호원은 발명진흥법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및 특허청 공고 제2016-9호(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위탁기관 지정서)에 따라 위조상품 단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36)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2019~2022년): 오픈마켓·포털·SNS를 모니터링하여 위조상품

상표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상표법」에는 특허청장이 상표 보호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준수 절차 등을 규정할 경우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의 서면실태조사³⁷⁾ 등을 참고하여 상표 보호를 위하여 서면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등의 사례³⁸⁾를 고려할 때 특허청장이 상표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삭제 조치
참고자료 1.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 사업개요
37) 「공정거래법」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참고자료 10. 서면실태조사 입법례’ 참조)

38) (예시)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3.12.2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바. 위반사실 공표 및 과태료(이철휘의원안)

개정안은 특허청장의 정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안 제237조제1항 신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그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9조의2 신설).

[표 1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이철휘의원안
<신 설>	제229조의2(위반사실 공표) ① 특허청장은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7조(과태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특허청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의4제3항에 따른 특허청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같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u>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u> 4. <u>제108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u>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u>----- ----- -----.
---	--

개정안은 법 집행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안 제108조의3제7항 본문), 특허청장의 정보제출명령(안 제108조의4제3항),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안 제108조의6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요구(안 제108조의7제2항)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한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려는 것임.

행정상의 위반행위 및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효율적인 법 집행 및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여지고,³⁹⁾

이러한 위반행위 및 의무태만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위반사실 공표

39) 참고자료 11. 위반사실 공표 입법례

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를 도입하고 있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으나,⁴⁰⁾

관련 협회 등은 현행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⁴¹⁾

40) 참고자료 11. 위반사실 공표 입법례

41)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임.

사. 벌칙(이철규의원안 및 김정호의원안)

2건의 개정안은 판매자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정보를 청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철규의원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 제234조의2제1항 신설), 김정호의원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4조의2 신설).

또한 이철규의원안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상표권 침해주장을 하거나 서비스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4조의2제2항 신설).

[표 1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이철규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신 설>	제234조의2(벌칙) ① 제10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되거나 청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이용자의 정보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제10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234조의2(벌칙) 제10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되거나 청구된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침해 방지 조치 요구 또는</u> <u>서비스 재개요구를 하여 온</u> <u>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u> <u>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u> <u>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u> <u>의 벌금에 처한다.</u>	
--	--	--

먼저 ‘목적 외의 정보 사용’에 대한 처벌 관련하여,

2건의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이용자의 정보를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벌칙 형량의 경우 이철규의원안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 관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제136조제2항제3호의 242))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김정호의원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경우⁴³⁾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42) 「저작권법」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의2(*)에 근거하여,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4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및 제71조제2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정당한 권리 없는 자로 인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 방해’ 시 처벌 관련하여,

무분별한 상표권 침해주장 등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유사한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하게 형벌 규정⁴⁴⁾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44) 「저작권」 제137조제1항제6호(*)에서도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참고 1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 사업개요

○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9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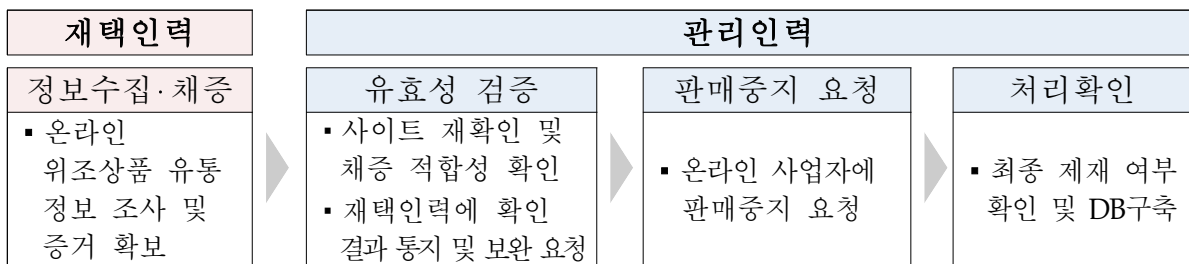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을 운영 중

* 예산현황(백만원) : ('19년·'20년) 1,050 → ('21년~'23년) 1,578 → ('24년) 1,609

○ 「재택모니터링단」은 위조상품 증거수집하는 재택인력 및 증거 유효성을 검토하고 판매중지 요청하는 관리인력으로 구성

* ('24년) 152명(재택 145명, 관리 7명)

<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업무절차 >



- 위조상품 지칭 키워드(예: 레플리카,미러급 등) 검색을 통해 오픈마켓, 포털, SNS 대상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모니터링 및 삭제 조치

< 연도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실적 >

구분	'19	'20	'21	'22	'23	합계
단속실적(건)	121,536	126,542	171,606	181,131	198,853	799,668

< 온라인 플랫폼사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실적 >

(2024년 기준, 단위: 건)

구분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합 계
단속실적(건)	14,074	76,948	134,819	225,841

* 해외 직구플랫폼 모니터링 건수 포함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③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의무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를 오픈마켓 운영자가 임의로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삭제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 4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제한 관련 해외 입법례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시 온라인플랫폼에게 신고에 기반한 조치의무(notice&take down)를 규정, 이를 책임기준으로 활용

□ **EU** 디지털 서비스법(DSA, 발효('22. 11. 16), EU 회원국 전체 적용('24. 2. 17))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위조상품 신고시, 신속하게 해당 콘텐츠 차단 등 조치를 하면 상표권 침해 책임 면제

* 오픈마켓, 망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앱스토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포함

- (특징) 일반적·사전적인 모니터링 의무 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

□ **일본**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통칭: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 특정전기통신제공자*는 위조상품 신고시, 상당한 소명에 기초하여 콘텐츠를 삭제하면 손해배상 책임 면제

* 방송, 1대1 통신(이메일) 등을 제외한 특정전기통신의 송신이 규율대상이며, 웹 호스팅, 제3자가 자유롭게 쓰기 가능한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이에 해당

- 즉시 삭제의무는 아니며, 제3의 공적 판정기관(상표권관계실효성확인 단체)의 판정서가 상당한 소명 판단에 핵심적인 자료로 기능

□ **중국** 전자상무법

-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위조상품 신고시, 차단 등 조치의무가 있으며, 미조치시 연대책임

* 전자상거래에서 거래 쌍방 또는 복수의 당사자에게 네트워크상의 거래장소 제공, 거래 중개, 정보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

□ **미국** 샵 세이프 법안(SHOP SAFE Act, '23년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전·사후조치, 침해 발생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 모두 이행해야만 책임 면제

* 동 법안은 'electronic commerce platform'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아 정확한 적용 대상 OSP 범위에 대하여는 지속 모니터링 필요

저작권법

-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제15조(정보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및 사업자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6

침해자 신원정보 제공 관련 국외 입법례

국가	관련 내용
유럽	○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 * 발효('22. 11. 16), EU 회원국 전체 적용('24. 2. 17)) -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이 위법행위의 추적 등을 위하여 EU법이나 자국법을 근거로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면, OSP는 필요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응하여야 함 (DSA 제10조) * OSP의 서비스를 통한 상품판매자 등
일본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통칭: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 권리주장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보유한 발신자의 불법이 명백한 경우 발신자 신원정보를 개시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권리주장자가 법원에 발신자 정보를 개시 청구하면 법원이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발신자 정보 개시를 명령(제5조, 제6조 제8조 등)
미국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비자를 위한 정보공개법 (INFORM Consumers Act)(2023년 6월 27일 시행) - (법 적용대상자) 온라인마켓플레이스(*) 및 대량판매자(**) (*) ①소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통하여, ②판매자가 미국에서 제품 판매, 결제, 보관, 배송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③하나 이상의 판매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고, ④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위해 이 기능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는 주체가 되는 경우 (**) 과거 24개월 사이 연속 12개월동안 200건 이상의 신제품 거래실적이 있고, 총 거래액이 5,000달러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의무) 대량판매자의 신원정보 수집(*), 확인 및 공개(**) (*) 대량판매자의 은행정보, 연락처, 세금ID,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최소 1년에 한번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 업데이트 (**) 제품목록 페이지나 주문 및 거래과정에서 연간 판매량 20,000달러 이상인 판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할 의무 등 - (위반의 효과) 온라인마켓플레이스가 의무 위반시 연방거래위원회법(15 u.s.c. 57a(a)(a)(B)) 위반으로 간주, 위반 건당 50,120달러의 민사 과징금 부과

자료: 특허청

■ 미국

- 특허법 271조 (f):

- (1) 권한 없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을 미국 내에서 비 결합상태로 공급하면서 외국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사람은, 해당 결합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미국 내에서의 비 결합상태의 공급으로도 침해의 책임을 진다.
- (2) 권한 없이 미국 내에서 특허품의 전용품을 공급하고, 해당 전용품이 외국에서 나머지 부품과 결합하도록 하는 사람은, 해당 결합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미국 내에서의 전용품의 공급만으로도 침해의 책임을 진다.

- 영업비밀보호법 (18 U.S.C. §1837): 이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 (1) 범죄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자연인이거나 미국 법률이나 주법 또는 그 정치적 하부 기관에 따라 조직된 조직인 경우 또는
- (2)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가 미국에서 저질러진 경우

- SHOP SAFE 법안(2023) 제2조

- (4) (B)플랫폼은 해당 판매자의 침해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된다
 - (i) 다음 사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할 것, (I) 판매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서비스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 등록한 점

■ EU: GDPR(일반정보 보호규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2018. 5. 제정된 위 EU법은, EU 역외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거나 수탁처리하는 자가 EU 역내의 정보주체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45) 출처: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시장에서의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부과를 위한 입법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24.6. 고려대 산학협력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이런 GDPR의 역외적용 규정에 따라 역외 기업이라도 EU 회원국 내 거주자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GDPR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나아가 역외의 정보처리자는 EU 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였다(제27조 제1항)

■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 2017년 제정된 이 법은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진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레딧,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적 적용대상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 범죄모의, 테러 및 폭력 선동, 아동포르노 등 독일 형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에 대해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삭제 등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어기면 소셜미디어 기업주는 최대 500만 유로, 해당 기업은 최대 5,000만 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 기업이 독일 외의 국가에 존재하더라도 역외적용되며, 실효적 적용을 위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거나 법집행 절차의 서면을 수령하는 등 역할을 담당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제5조).

■ EU: DSA(Digital Service Act)

- EU는 2022년 온라인 디지털 환경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부여 및 면책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서 DSA를 입법하였는바, 그 주된 적용대상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콘텐츠 제공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셜 미디어 사이트 등이다. 유럽 위원회는 2023년 DSA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ISSP 들을 지정했는데,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Booking.com/ 페이스북/ 구글 플레이/ 구글지도/ 구글 쇼핑/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Pornhub/ 스냅챗/ 스트립챗 / 틱톡/ X (이전 트위터)/ 위키피디아/ XVideos/ 유튜브/ 잘란도/ Bing/ 구글 등이 그 대상기업인데, 그 중 대부분이 EU 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DSA의 규정은 실제로 역외적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DSA는 EU 내에 소재하지 않으면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적 책무 수행이나 법 위반 시 원활한 의사연락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 중 한 곳에 법적 대리인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1조).

■ 일본 電氣通信事業法(2020)

- 일본은, 외국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이용자 정보의 대량 유출이나 대규모 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본 내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해당 법에 대한 집행 가이드라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지침’은 일본에 전기통신회선을 설치하지 않고 해외에서 이메일 서비스, 메시지 서비스 등 타인의 통신을 중개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일본 내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역외적용), 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법 제10조).

참고 8

역외적용을 규정한 국내 입법례

법률	관련규정
공정거래법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자본시장법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또는 금융거래지표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같은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2.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 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관세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 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